

추락방지용 안전시설 (건설업)



추진배경 및 목적

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(시스템 비계, 안전방망)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소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활동을 촉진하고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

지원대상 및 조건

01 지원대상

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후 보험료 미채납된 공사금액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(시스템 비계, 안전방망) 설치 사업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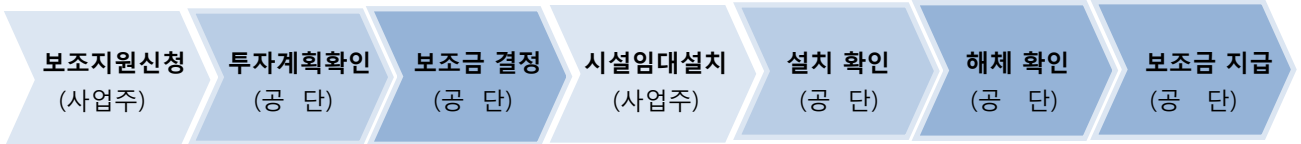
02 조건

시스템비계 임대·설치·해체, 안전방망 구입·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은 65%, 3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은 60%, 공사금액20억원이상50억원 미만은 50% 지원

※ (지원 제외 대상)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(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)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,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, 보험료를 체납하는 자

단계별 세부내용

1 추진대상



2 보조 설비대상

- 수직·수평·가새재, 안전난간, 가설계단,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이 일체화된 시스템비계
- 시스템비계 지원 현장에 한하여 낙하물방지망(플라이넛) 및 수직보호망 지원

[안전방망 종류 및 규격]

품 목	기 준
낙하물방지망 (플라이넛)	-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 - 사다리 : 폭30cm내외×길이2m이상
추락방호망	-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
수직보호망	-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

담당자: 사업지원실 재정사업부 이나은대리 (052-7030-778)

